

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규약 일부개정(안) 동의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2819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1. 07. 08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2021년 07월 08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회장, 부회장의 임기(2년간 2회)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에 맞추고자 조문을 개정함.
- 유고 시 선출된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 회장 및 부회장의 잔여 임기로 규정하고, 차기 회장이 선출되는 해의 부담금 집행은 전(前) 회장 시에서 당해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집행함을 규정하는 등 관련 조문을 개정함.

3. 주요내용

- 조직 규정 개정(안 제7조)
 - 유고 시 선출된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전임 회장 및 부회장의 잔여 임기로 규정
 -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있는 해의 임기는 회장 및 부회장의 선출 시기와 상관없이 당해 연도 7월 1일부터 2년으로 규정
- 경비집행 규정 개정(안 제17조)
 - 차기 회장이 선출되는 해의 부담금 집행은 전(前) 회장 시에서 당해 회계연도 종료 시까지 집행.
- 부칙
 - (회장 및 부회장 임기) 제2대 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에 한하여 2022.06.30.까지로 규정

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지역의 공동 관심사인 문화관광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직 및 경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